

노동부, 남녀차별
취업규칙 개선지시

여행원 분리채용 폐지

기존 여행원 차별임금 시정도 뒤따라야

그간 일반행원과 여행원으로 남녀를 분리해 은행원을 모집하던 제1금융권의 사원모집 채용 제도가 올 가을부터 없어지게 됐다.

노동부는 지난 12일 제1금융권의 채용시험이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된다고 밝히고 성별에 따른 취업규칙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제1금융권의 행원채용은 하반기부터 대졸자의 경우에만 남녀구분없이 모집·채용하던 방식을 고졸자의 행원채용에도 그대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행원채용은 여상고를 졸업한 여행원과 상고를 졸업한 초급행원으로 분리 모집하는 반면 대졸자를 대상으로 한 중견행원을 따로 뽑아왔다.

따라서 이번 성차별 분리채용이 폐지되면서 여성 고졸행원들의 성별에 의한 구분모집이 없어져 일반행원은 물론 같은 고졸행원과의 남녀간 차별임금은 자연히 시정되게 된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앞으로 뽑는 신규채용자들에게만 적용돼 그간의 차별채용으로 분리호봉체계를 적용받고 있는 기존 여행원들의 차별임금 시정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아쉬움이 크다는 게 제1금융권과 여성계의 공통된 반응이다.

전국 금융 노동조합 연맹 여성국은 지난해 기존 남녀행원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첫 걸음으로 초임호봉을 맞췄으나 아직 남녀간에 좁혀지지 않고 있는 본봉승급액과 직급수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11월 금융노련은 남녀행원의 차별임금을 줄이는 방안으로 4% '특별예산 책정'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현재 진행중으로 제1금융권의 단체협약에서는 국책은행의 경우는 여행원의 직책(급)수당을 남행원과 맞춰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시중 은행노조는 은행측에 계속 직급수당 요구안을 받아들이도록 촉구 중이다.

금융노련 이경자 여성부국장은 "남녀 행원을 구분하는 채용차별이 폐지된 것은 반가운 일이나 기존 여행원의 분리호봉체계에 대한 시정이 함께 병행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여기서 오는 혼란과 신규사원, 기존 행원간에 발생할 문제 또한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부는 그간의 여행원 분리채용이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2항(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임신 등의 사유로 합리적 이유없이 채용 또는 노동조건을 달리하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과 제16조(모집·채용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를 위반한 것으로 앞으로는 은행원의 직종을 직무 내용 또는 성질에 따라 구분하고 각 직종별로 남녀에게 동등한 채용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개선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성 노동계는 "직종을 직무내용과 성질에 따라 분리해 동등한 채용기회를 두겠다는 방침은 자칫 여행원이 하는 수신업무를 별도의 직종으로 구분, 이를 낮게 평가되는 방향으로 나갈 소지도 없지 않다"며 노조의 활동을 통해 △기존 여행원의 차별임금의 개선과 함께 △합리적인 직무평가제가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